

## 고 시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-78호

## 무교다동구역 제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
1. 건설부고시 제367호, 제368호(1973.09.06.)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116호(2022.03.17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510호(2023.11.23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4-48호(2024.08.07.)로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4-69호(2024.11.20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, 우리 구 을지로1가 16번지 일대 무교다동구역 제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,
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, 「같은법」 제7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25년 9월 17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: 무교다동구역 제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  - 위 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일대
  - 면 적 : 2,208.4㎡[대지 : 2,103.6㎡, 정비기반시설(도로) 104.8㎡]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 - 성 명 : (주)포스코와이드 외 2 대표 김원희
  - 주 소 : 서울 중구 세종대로 73, 22층(서소문동, 태평로빌딩)
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: 2025.09.17.
5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
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| 대지면적<br>(㎡) | 건축면적<br>(㎡) | 건폐율<br>(%) | 연면적<br>(㎡) | 용적률<br>(%) | 층 수<br>(층)     | 높이<br>(m) | 용 도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,103.6     | 1,037.1     | 49.30      | 27,554.17  | 888.19     | 자상23층/<br>지하6층 | 113.5     | 업무시설, 근린생활시설,<br>문화집회시설 |

## 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## 1) 분양대상자 및 분양면적

| 공급대상   | 업무시설<br>(㎡) | 근생시설<br>(㎡) | 문화집회<br>시설(㎡) | 추산액(원)<br>(종후평가액) |
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계      | 22,430.57   | 837.91      | 4,285.69      | 362,657,000,000   |
| 토지등소유자 | 13,109.20   | 489.70      | 2,504.71      | 211,949,348,000   |
| 체비시설   | 9,321.37    | 348.21      | 1,780.98      | 150,707,652,000   |
| 보류시설   | -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|

## 2) 보류지: 해당없음

## 다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

|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|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|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|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---|
| 종류            | 규모(㎡) | 시행자        | 부담자 및<br>부담내용    | 관리청 | 종류          | 규모(㎡) |
| 도로            | 104.8 | (주표스코아)외 2 | 사업행차 조성후<br>무상부속 | 중구  | -           | -     |
| 계             | 104.8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| -     |

## 라.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: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3개월 이내 (예정)

## 6. 기타 관계도서는 생략 (중구청 도심정비과에 비치 ☎02-3396-5773)